

商標拒絶不服

—第85-19323號—

〈大法院 第2部 判決〉(1989, 6, 27)

事件審號：87후 93

裁判長：김상원

關與法官：배석·김주한

1. 上告人(出願人)：삼광개발(주) (대표 최성암)
2. 被上告人(相對方)：特許廳長
3. 原審決：特許廳 抗告審判所 1987. 6. 30字 1986年 抗告審判(絕) 第803號
4. 主文：上告를 기각한다. 上告費用은 出願人の 부담으로 한다.

5.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상표는 한글로 “생명물”이라 표기하여서된 문자상표로서 비록 한글로만 표기되어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를 “생명물”(生命物) 또는 (生命水)로 직감함이 일반거래

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차 및 음료수 제품인 “녹차”, “사이다, 광천수”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생명물인 녹차”, “생명력을 불어 넣는 광천수” 등으로 인식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같은 사실은 오늘날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더욱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원심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